연구 · 개발용품 290개 관세감면

재경부, 석유화학용 13품목 포함 … 기본세율 80% 감면조치

재정경제부는 6월25일 산업기술 연구 · 개발에 사용되는 29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.

지정된 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가 자체조사를 거쳐 기업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경부에 지정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존 288개 품목 중 수요가 작은 오존수 생성기 등 61개 품목이 제외되고 대신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.

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운영현황

구 분	1996	1997	1998	1999	2000	2001	2002
품목수(개)	275	250	253	276	265	288	290
감면액(억원)	367	404	277	179	172	169	220

주요 지정품목은 반도체분야의 ▲박막결정화장비 ▲원심분리기 ▲감광액제거기, 기계분야의 ▲자유곡면 가공기 ▲피로시험기 ▲엑스선 측정기, 우주항공산업분야의 ▲연료공급장치 ▲데이터저장장치, 방송분야의 ▲동영상서버 ▲영상분석기 ▲디지털 프로젝터 등이다.

수입관세 감면대상 주요 연구개발용품

산 업	주요 감면대상 품목
반도체산업	박막결정화장비, 자기저항측정기, 원심분리기, 감광액제거기 등 46품목
전기 · 전자	중량측정기, 항온항습기, 레이저발생기, 성분분석기 등 77품목
기계산업	자유곡면가공기, 피로시험기, 엑스선측정기, 인장시험기 등 29품목
철강 · 금속	환원가스차단장치, 유기화합물 농도측정기, 전자빔시험기, 자성측정기 등 6품목
자동차산업	차량전복시험기, 인체모형교정기, 차량충돌시험장치, 산업용내시경 등 74품목
우주 · 항공	연료공급장치, 공기공급장치, 유압공급장치, 데이터저장장치, 추적안테나 등 22품목
발전업	전력품질측정기, 전압측정기, 분광분석기, 산화열처리장치, 전원공급기 9품목
방송업	동영상서버, 영상분석기, 동화상재생기, 영상모니터, 디지털프로젝터 등 9품목
석유화학	용출시험기, 표면측정기, 인열강도시험기, 다기능측정기 등 13품목
기 타	제약업의 세포분리장치 등 5품목

재경부는 7월1일부터 1년간 29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에서 80%가 감면된 1.6%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지정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입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불이익방지를 위해 8월31일까지 신고분에 한해 기존규정을 적용,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6/27>